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208호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비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

I. 목적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접수받고자 함

II. 지정기준

□ 신청 자격 (법 제34조의2,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

-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

1. 안전성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일 것
2.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기관일 것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중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려는 품목마다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高價) 검사설비의 경우에는 그 검사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설비의 임차·사용계약 등을 체결하면 그 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에서 시험·검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시험·검사요원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나.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 또는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안전성검사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검사설비 및 검사자격은 다음과 같다. (안전기준 KC 10031 제정안 부속서 A)

검사 항목		검사설비 또는 검사자격	
대상	검사		
재사용전지모듈	6.3.1 개방회로전압(OCV)	직류전압측정기, 항온실	
	6.3.2 절연 검사	절연저항측정기, 항온실	
	6.3.3 용량 검사	충방전설비, 항온실	
	6.3.4 내부 저항 검사	6.3.4.1 내부 a.c. 저항	충방전설비, 내부저항측정설비, 항온실
		6.3.4.2 내부 d.c. 저항	
6.3.5 자가방전 검사	충방전설비, 직류전압측정기, 항온실		
재사용전지시스템	7 기능 안전성 검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KC 62619의 8절 항목 인용)	
	과충전 전압 제어		
	과충전 전류 제어		
	과열 제어		

Ⅲ. 업무수행 범위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7의2 및 운용요령 개정안 별표 3의2에 따른 품목

1. 재사용전지모듈
2. 재사용전지시스템(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Ⅳ. 지정 방법

1. 신청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 및 접수

* 본 공고일 이후 수시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 가능

2. 신청서류 문서심사 및 필요시 보완

3. 심사원 구성 및 심사계획 수립 후 현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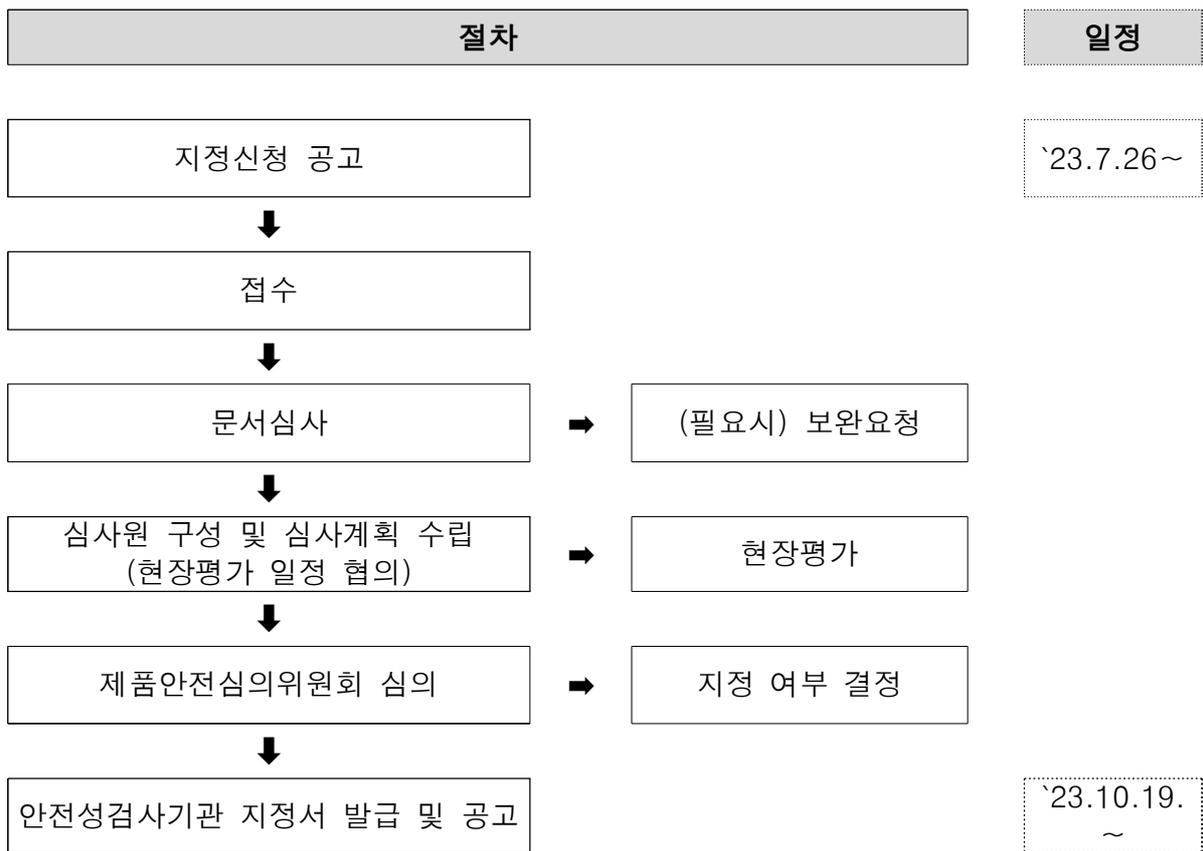
* 운용요령 개정안 제17조에 따른 심사반 구성 등

4.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정 결정

5.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 발급(`23.10.19.~)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후 안전성검사 업무 수행하기 전까지 법 제34조의9 및 시행령 개정안 제 14조의4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 필요

< 지정 절차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등 지정 및 심사가이드(안)”의 절차에 따라 심사 예정(국가기술표준원장공고 제2023-212호 행정예고문 참고)

V.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시행규칙 개정안 제55조의2)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4.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시행령 개정안 별표 2에 따른 지정 신청 수수료(50,000원) 외 심사수수료는 신청 접수 후 심사 계획 확정 및 현장심사 시 제출

○ 신청방법

1.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이 수정될 경우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됨

○ 접수기간: 2023년 7월 26일(수) ~

○ 문의처: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기현종 연구관(043-870-5441) 또는 진희철 사무관(043-870-5445)

붙임 : 안전성검사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예)

[붙임] <안전성검사기관 사업계획서 작성 (예)>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분야 및 범위 :

2. 일반현황

- (1) 안전성검사기관명(약호) :
- (2) 대표자명 :
- (3) 법인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 (4) 검사실소재지 : 우편번호, 주소
- (5) 설립일자 :
- (6) 설립근거법령 : 민법32조 혹은 특별법 몇 조 등
- (7) 설립형태 :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
- (8) 주요업무 또는 주요 생산품목
- (9) 인원현황 (명)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기 타	계
검사부서					
지원부서(행정, 관리, 기타)					
계					

- (10) 검사설비현황
 - 가. 총 보유 : 000시험기 등 00종 000점
 - 나. 신청분야 : 000시험기 등 0종 00점
- (11) 검사설비 약도
 - 가. 개략도
 - 나. 상세도

3. 검사설비 보유현황

(1) 검사설비 현황 (중 점) : (신청분야만 작성)

시험설비 보유현황
안전기준번호
안전기준명칭

R (Required) = 자체보유

S (Subcontracted) = 위탁계약 보유

번호	시험항목명	필요설비 또는 장비	자체 또는 위탁 구분	보유여유
2	Normative References	Access to copies of listed standards	R	R

비고) 위탁계약설비는 위탁계약서 첨부

4.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유지관리현황

(1) 검사실 배치도

(2) 검사실현황

시험실	온도(℃)	습도(%)	조도(lx)	소음 진동(dB)	배기 시설	항온항습/ 공조	비고

(3) 시험설비 배치도 및 전원공급 배선도